

제 287회 시의회 정례회  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201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

# 예산 전용내역 보고

일 시 : 2019. 6. 17.(월)

장 소 :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

안 건 : 201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전용  
내역 보고의 건

## 소 방 재 난 본 부

# 201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
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55조의2(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 제3항에 따라, 201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립니다.

## □ 4분기 전용내역 : 1건 24억원

### ○ 세부내역

(단위: 백만원)

| 부서         | 정책사업   | 세부사업  | 통계목             | 예산액     | 전용금액  |       | 승인일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 감액    | 증액    |            |
| 소 방<br>행정과 | 행정운영경비 | 인력운영비 | 304-01<br>연금부담금 | 82,879  | 2,400 | -     | '18.12.27. |
|            | "      | "     | 101-01<br>보수    | 441,278 | -     | 2,400 |            |

- 전용사유 : 「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근무일과 개선 시행계획」에 의거 교대근무자의 공동근무 시간인 점검시간 20분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함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연금부담금에서 전용 한 것임.

#### 《 교대점검 시간 20분 초과근무 근거 》

- 근거
    - 소방공무원 근무규칙(소방청 훈령 제49호, 2018. 7.10 시행)
    - 『현장대응역량 강화 프로그램』 전면 시행계획 보고(소방청 소방정책과-4548. '18. 6.29.)
    - 현장중심의 근무일과 개선 시행 계획(소방본부 소방행정과-17394, '18. 7.18.)
  - 주요내역 : 소방공무원의 교대점검을 전국 표준교대점검 매뉴얼 공통 시행에 따른 교대점검(공동근무)시간 초과근무시간 인정
    - 공동근무시간 변경시행 : 15분 → 20분으로 조정
      - ▶ 3조2교대 : 08:40~09:00, 17:40~18:00
      - ▶ 3조1교대 : 08:40~09:00
- ⇒ 교대근무자 1인 월평균 5시간정도 발생, 초과근무 평균단가 9,787원, 교대근무자 대상 5,431명